

인천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4타경57115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2. 9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한동욱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 8. 4. 압류			배당요구종기	2025. 2. 24.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임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이선아	비02호 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2.4.20.~	125,000,000		2022.4.20.	2022.4.13.		
		현황조사	주거 임차인				2022.04.20			
	비02호 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2.4.20.~2 024.4.20.	125,000,000		2022.4.20.	2022.4.13.	2025.2.4.	
<비고>										
이선아:경매신청채권자이자 주택임차권등기권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.2.29.임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9번 임차권등기(임대차보증금 125,000,000원, 전입일자 2022.04.20. 확정일자 2022.04.13.)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- 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- 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4타경571152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7-7

서부빌라
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서구 용두산로14번길 3-2

철근콘크리트조 스투브지붕 4층

다세대주택

지층 90.94㎡

1층 90.94㎡

2층 90.94㎡

3층 90.94㎡

4층 90.94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지하층 비02호

철근콘크리트조

39.8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27-7

대 253.4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244.5분의 24.48

감정평가액

69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

2026.01.05

69,000,000

6,900,000

2회

2026.02.06

48,300,000

4,830,000

3회

2026.03.23

33,810,000

3,381,000

4회

2026.04.22

23,667,000

2,366,700